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45,885,471 | 10,376,564 |
| 일반회계 | 338,196,000 | 10,145,880 |
| 특별회계 | 7,689,471 | 230,684 |
| 기타특별회계 | 7,689,471 | 230,684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619,713 | 18,591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916,809 | 27,504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975,234 | 29,257 |
| 주차장특별회계 | 5,177,715 | 155,331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729,00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
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지방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제 10 조 ※ 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지역발전→지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교부금→특